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116

발의연월일: 2025. 4. 25.

발 의 자:김동아·임호선·전현희

박정현 • 문진석 • 양문석

윤준병 • 이병진 • 허성무

서삼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그 규율대상인 대규모유통업자를 소매업종 매출액이나 매장면적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판매자로 규정하는 등 매장·점포 등을 통한 전통적인 방식의 판매자만을 상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 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가 피해를 입는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현행법상 규율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등에 따라 영세한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받고 그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기한이 길어 영세업체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함.

이에 온라인 플랫폼 통신중개를 통한 총매출액, 판매금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현행법의 일부를 적용하고,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 등이 합당한 대가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조의2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를 "납품업자, 매장임차인 또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이용사업자가"로 한다.

제2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전자적 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2.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이용사업자"란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용역 또는 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재화등"이라 한다)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비대면 전자 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의"를 "이 법의"로, "있어서는"을 "있어서"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장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②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다만, 제2장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1. 직전 사업연도의 중개거래수익[국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통신판매중개 및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통한 총매출액(이하 "중개거래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이 100억원 이상인 자
- 2. 직전 사업연도의 중개거래금액(국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등의 총판매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총판매금액을 12개월

제3조제1항제1호 중 "또는 매장임차인"을 ", 매장임차인 또는 국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이용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의2제1항에"로 한다.

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이 1천억원 이상인 자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0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0일"을 "30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자가 중개거래에 있어 재화등의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에게 계약을 통하여 판매대금 관리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간이 만료된 날(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판매대금을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용사업자에게 지급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이내에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 무를 행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숙박·여행·공연 등 장래에 공급일이 특정되어 있는 용역(용역을 이용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중개거래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용역의 이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10일
- 2.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해당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판매대금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이 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기한 직전 3영업일까지 판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판매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제35조제1항 본문 중 "임대료를"을 "임대료 또는 중개거래매출액을"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료의"를 "임대료 또는 중개거래매출액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통한 중개거래의 판매대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에는 해당 호에 따른 일자로 본다.

1. 시행일로부터 1년 미만 경과: 제8조제3항 본문의 '20일'은 '40일'

2. 시행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경과: 제8조제3항 본문의 '20일'은 '30일'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규모유통 제1조(목적) -----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 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 품업자, 매장임차인 또는 온라 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 | 인 중개거래 플랫폼 이용사업 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가-----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현행과 같음) 1. ~ 10. (생 략) <신 설> 11.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이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 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 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 락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전자적 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 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하 "임차료등"이라 한다)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단서 신설>

1. • 2. (생 략)

12.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이용사업자"란 온라인 중개거 래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용 역 또는 이를 이용하거나 제 공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재화등"이라 한다)를 소비자 에게 판매하는 비대면 전자상 거래를 하는 사업자를 말한 다.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이 법의------있어서----------. 다만, 제2장의 적 용에 있어서는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9조 까지 규정에 한정하여 적용한 다.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 ②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다만, 제2장의적용에 있어서는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에한정하여 적용한다.
- 1. 직전 사업연도의 중개거래수 익[국내 온라인 중개거래 플 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통신판매중개 및 이에 부수 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통한 총매출액(이하 "중개거래매 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 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이 100억원 이상인 자
- 2. 직전 사업연도의 중개거래금 액(국내 온라인 중개거래 플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 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 2. 제2조의2에 따라 대규모유통 업자로 의제되는 사업자가 자 신과 거래하는 다수의 매장임 차인 중 일부 매장임차인으로 부터는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 는 임차료등을 수취하지 아니

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통하
여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등
의 총판매금액을 말한다. 다
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
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총판매금액
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
로 한다)이 1천억원 이상인
<u> 가</u>
제3조(적용제외) ①
1,
매장임차인 또는 국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이용사업자-
2. 제2조의2제1항에

② (생략)

하는 경우 그 매장임차인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사업자 간의 거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	
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u>40일</u> 이	<u>20일</u>
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	②
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	
일부터 <u>60일</u> 이내에 해당 상품	<u>30일</u>
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u><신 설></u>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의2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
	자로 의제되는 자가 중개거래
	에 있어 재화등의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전자금
	용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
	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에게 계약을
	통하여 판매대금 관리를 위탁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전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 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간이 만료된 날(용 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 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 츠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판 매대금을 온라인 중개거래 플 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지급하거 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로 하여금 이 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이 내에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거 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로 하여금 이 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숙박·여행·공연 등 장래에 공급일이 특정되어 있는 용역(용역을 이용하거나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중개거래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용역의 이용을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부⑤ ------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제4항까지의------

개시한 날로부터 10일
2.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전자
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
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해당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계
약을 통하여 판매대금 관리
를 위탁받은 자가 이 항 본
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
기한 직전 3영업일까지 판매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판매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u> 3영업일</u>
<u>④</u> 제1항부
터 제3항까지에서
<u>⑤</u>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 저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 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 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 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만,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규정한 조문별로 산정하되, 그 합계가 제1항에 따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u>임대</u> 료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과징금) ①	
임	대금
프 또는 중개거래매출액을	
<u></u>	
,,	
<u>.</u>	
2	
	<u>임대</u>
료 또는 중개거래매출액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